

N · E · W · S · P · L · A · Z · A

해외 경쟁정책 동향

본협회 조사부

미국편

미 법무부, First Bank의 First Interstate 기업결합 신청 승인

미국 법무부는 First Interstate Bancorp를 103억 달러로 매수하려는 First Bank System Inc.의 계획을 이들이 예금 잔고 1억 7천만 달러의 지점들 매각에 동의한 이후에 승인했다.

미국 법무부는 와이오밍 주 Laramie와 Riverton에 소재한 First Bank System의 지점들과 몬태나 주 Great Falls에 소재한 First Interstate의 지점들이 매각되면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해 승인의 결과 이들은 또한 잠시나마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Wells Fargo & Co. 보다 우위를 점하게 되어 있는데, 이 회사는 로스앤젤레스에

소재한 First Interstate에 대하여 적대적 매수를 시도하여 왔다.

법무부는 곧 108억 달러 상당의 당해 매수 신청에 대한 검토를 끝마칠 것으로 보이며, 반면 연방준비은행은 Wells Fargo가 매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First Interstate의 지점들을 매각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만일 연방준비은행이 그러한 움직임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Wells Fargo는 자신의 지점 및 예금 잔고를 처분할 것을 제의했는데, 이는 미네애폴리스에 소재한 First Bank System의 제시 내용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였다. 당해 자산 매각은 예금액 9억 달러 상당이다.

분석가들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는데, 이는 투자자들은 먼저 심사가 종결될 때 수 신청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First Bank

측은 자신들의 매수 신청이 Wells Fargo의 것보다 더욱 빨리 처리되고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Wells Fargo 측은 자신들이 반트러스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지점 매각에 합의했으므로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두 매수 신청은 모두 연방준비은행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996. 1. 17. The Wall Street Journal)

미국, Windows 95 조사 확대

미국 법무부 반트러스트국 조사관들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계속되는 조사의 일환으로서 인터넷 회사들에 한 차례 새로이 민사소환장을 발부했다고 산업계 임원들이 밝혔다.

이 소환장은 법무부 관리들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Windows 95 및 관련 인터넷 소프트웨어가 사용자들이 인터넷에 접속하게 하는 경쟁

프로그램들을 부당하게 마비 시키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 경우 일부 사용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자체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더욱 단순한 방법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산업계 임원들은 법무부가 Netscape Communications Corp. 및 온라인 서비스 회사인 Compuserve Inc.에 '민사 조사요구서'를 발부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 조사관들은 또한 또다른 인터넷 접속 지원업체인 Netcom On-line Communications Services Inc.와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경쟁 관계인 일단의 온라인 서비스 회사들과 접속 프로그램 공급 업체들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지난해 8월, Windows 95를 출시했을 때 이를 제소하였다.

이들은 새로운 운영 체제 및 이에 수반되는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인 'Plus!'가 일단 사용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를 거쳐 인터넷에 접속하고자 할 때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접속 프로그램들을 본질적으로 마비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제소 당사자인 회사 Netscape 사, Netcom사, Com-puserve 사 및 인터넷 회사들인 Network Tele Systems Inc. 및 Software

Tod & Die Inc. 등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임원들은 이 문제는 다른 회사의 소프트웨어의 취약성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하였고, 지난 해 12월 1일에도 같은 대답을 반복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경쟁 회사들이 소프트웨어 개정판을 내도록 원조하였으며, 경쟁 관계에 있는 제품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문제도 고의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당해 회사는 최근 법무부의 소환장에 관하여는 언급을 회피하였다. Netscape 사 및 Netcom 사 역시 논평을 회피하였다. Compuserve사는 소환장을 받았음은 시인하였지만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았다.

Netscape 사에 발부된 소환장은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Mountain View에 소재한 당해 회사는 인터넷에서 번성하고 있는 World Wide Web을 검색하는 가장 인기 있는 검색용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고 있다.

어림잡아 1,600만 명 이상인 World Wide Web 사용자 중 약 80%가 Netscape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당해 회사의 존재 가치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새로운 제품에 의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소프트웨어가 Netscape사의 것뿐이라고 해도 "Netscape사는 제소할 이유가 있으며, 법무부는 조사를 벌이거나 제소할 근거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워싱턴 주에 소재한 법률회사인 Patton, Boggs & Blow 소속 반트러스트 변호사인 Garret Rasmussen은 말하였다.

또다른 중요한 문제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법률적으로 사실상의 독점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는가이며, 또 만일 그렇다면 소프트웨어의 작동 장애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고의적인 디자인의 결과인가라는 점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만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독점사업자라면 당해 회사는 타인을 배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Rasmussen은 말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임원들은 Netscape사가 아직까지 Windows 95 및 이른바 Plus pack상에서 작동상 문제가 있다고 알려 오지는 않았다고 말하였다. "이 문제는 극소수의 사용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사소한 문제였다."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룹의 개인용 시스템 담당부장은 말하였다.

그러나 Netscape사는 Windows 95가 지난 해 8월

에 출시된 이후 공공연히 작동 상 장애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Netscape 검색프로그램은 Windows 95상에서 문제없이 작동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의 경로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기를 선택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이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제품이 경쟁회사 제품인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 필요한 사양을 자신의 것으로 덮어쓰게 된다. 이 제품을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사용자는 모든 사양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데, 이때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제품이 이 조정된 사양을 또 지워 버릴 수 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Conte씨는 “당해 회사는 Windows 95가 고의적으로 경쟁업체의 제품과 양립 가능하지 않도록 만들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러한 고장이 있게 되면 Windows 95의 인기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모든 소프트웨어와 양립 가능한 제품을 만드는 원대한 목표를 갖고 있다.”고 Conte 씨는 덧붙였다.

대부분의 인터넷 관련회사들은 Windows 95상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Concentric Network Corp.와 같은 회사들에는 Windows 95를 제대로 실행할 수 없다는 자사 제품 구매 고객들의 전화

가 폭주하였다.

“이 모든 사례들은 적어도 재정적으로는 우리에게 매우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다.”라고 Concentric사 사장인 Hank Nothhaft는 말하였다. Nothhaft 씨는 자신의 회사는 4주 이상 동안이나 매일 200통의 전화를 받았으며, 대 소비자 서비스 비용과 당해 회사의 수신자 요금 부담 전화료는 Concentric사의 제경비에 200만 달러를 추가시켰다고 말하였다.

(1995. 12. 4.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미국제'의 광고 표시에 관하여 공공 의견 제출 요청

1995년 10월 17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미국제'(Made in U.S.A.)의 광고 표시에 관하여 작업반 회의를 개최했다. 동 작업반 심의에 회부하기 위하여 '퍼블릭 코멘트'의 제출을 요청하는 관보고시를 10월 18일 발표하였다.

FTC는 1996년 2월이나 3월에 소비자 단체, 업계 및 정부 관계기관의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아래 사항에 관한 작업반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여기에 필요한 Public Comment를 1월 16일까지 제출토록 요청하였다.

(1) 「미국제」(Made in U.S.A.)의 광고 표시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2) 변경할 경우 미국제 부품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야만 '미국제'라는 광고 표시 기준에 합당한지 등 FTC가 특별히 의견을 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① 「미국제」 「아메리카제」 (Made in America)라고 표시된 상품 광고를 하였을 때 소비자가 당해 상품중에 어느 정도의 미국 부품 또는 노동이 투입된 것으로 추정할 것인가?

② '미국제'라는 표시에 대하여 미국의 부품 또는 노동이 투입된 기준을, 예를 들면 50%라고 하는 경우에 비하여 “전부 또는 거의 전부”라고 하는 경우의 비용과 편익은 어떻게 되는가?

③ 소비자는 '미국에서 조립됨'이라는 어구를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상품에 실질적으로 외국제 부품이 투입되어 있다는 취지로 생각할 것인가?

그렇다면 외국제 부품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고, 미국에서 조립된 부분이 근소한 경우 상품의 표시를 허가하였을 때 비용과 편익은 어떻게 될 것인가?

④ '미국제'의 표시에 관하여 국산 부품의 비율은 어떻게 측정되어야 할 것인가?

⑤ '미국제'의 표시에 관하여 FTC는 어떠한 형식의 지침을 제공할 것인가? 사안별로 법을 집행할 해도 괜찮은지, 법집행에 관한 정책의 표명,

지침 또는 규칙 제정이라는 형식을 취할 것인지, 이보다 유익하고 효율적인 다른 형식의 지침이 있는가?

FTC로서는 가능하면 의견 제출자가 자기의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도록 요청하고 있다. FTC에 의하면 1994년의 Hyde Athletic Industries Inc. 사건에 대하여 접수된 의견은 '전부 또는 거의 전부'라는 기준에 반대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중에는 생산의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미국제'라고 표시된 상품에 '전부 또는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미국의 부품과 노동이 투입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FTC 기준은 예를 들면 미국 세관이 사용하는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작업반 회의 개최에 앞서 사무국은 현재 소비자가 '미국제'라든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 프로젝트를 실시중에 있다. FTC는 1991년에도 같은 문제에 관하여 조사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많은 소비자는 '미국제'라는 표시의 의미를 당해 상품의 국산화율이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때에는 조사 대상인 소비자의 약 77%가 일반적으로 '미국제'라는 표시를 부품과 노동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를 자국산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995. 10. 17. F.T.C 신문 발표 / 10. 19. ATRR)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비토후스키 위원장 법집행에 관하여 연명

미국 FTC의 비토후스키 위원장은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국 상업회의소의 회합에서 FTC의 법집행 방법의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몇 가지 분야에서 참신한 생각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FTC는 지금까지 수평적 합병에 중점을 두어왔으나 앞으로는 수직적 합병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1980년대에 무시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대하여도 FTC는 이를 취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FTC는 일반적으로 효율의 촉진을 가져오고 반경쟁적이지 아니라는 이유로 수직적인 비가격 제한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았으나 이 분야야말로 참신한 생각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FTC로서는 심사를 하여 앞으로 수개월 이내에 이와 같은 위반 사건에 대하여 심판 수속을 개시할 것을 희망한다고 하였다.

독점에 관하여는 글로벌한 경쟁의 진전 결과 희소해지고 있다. 그러나 FTC로서는 기업의 구조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

는 독점을 기도하는 기업활동을 감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슬회하였다.

(10/26 Trade Regulation Report No. 391)

미국에 있어서의 최근의 합병 붐과 규제 기관

작은 것은 아름답다. 그러나 올해 미국의 기업 임원실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은 큰 것보다 좋다는 속담이다. 지난 주 체이스 맨하탄(Chase Manhattan)은행과 케미컬은행(Chemical Bank)이 미국 최대 은행의 탄생이 될 100억 달러 합병을 발표하였다.

한편, 타임 워너 사(Time Warner)는 세계의 미디어 기업을 목표로 80 억달러에 달하는 터너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사(Turner Broadcasting System)의 취득을 발표했다. 이번의 거대합병으로 통계상 1995년은 사상 최대의 합병의 해가 될 것이 확실하다.

Securities Data Co.에 따르면 1995년 하반기에도 상반기의 급증 추세를 계속 유지한다면 미국내 완료합병(完了合併) 가액(價額)은 합병 붐이었던 1989년을 능가하여 최고 3,300억 달러에 달한다는 것이다.

기술개발의 불확실성과 세계적인 경쟁 격화 그리고 기업통합에 호의적인 규제환경에 직

면하여 대기업은 향후를 바라 보며 커지고 있다.

「Mergers & Acquisitions」지의 편집자인 Martin Sikola 씨는 “1980년대의 합병 붐은 아직도 역시 뿌리깊게 계속되고 있다.”는 명언(明言)을 했다.

합병지향은 다방면에서 10년 전부터 종식되지도 않고 미루어져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그것과는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 오늘날 주로 전략적인 합병은 자기의 세력 확대와 코스트 삭감을 위해 동종 기업의 힘을 결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1980년대 최대(과거 최대임) 취득은 1989년의 Kohlberg Kravisk Roberts 사에 의한 나비스코사(RJR Nabisco)의 취득(250억 달러)인데, 식품·담배회사(나비스코사)의 시장 점유율 및 규모의 경제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다.

대조적으로 과거 10년간 기록적인 합병인 월트 디즈니 사(Walt Disney)에 의한 Capital Cities/ABC의 취득(190억 달러)에서 양사는 새로운 규모와 확대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아이디어가 넘치는 임원을 취득했다.

투자가인 Kirk Kerkorian 씨가 크라이슬러사를 취득하여 급년중에 이 회사를 비공개로 하려고 하는 불행한 시도를 개시했을 때 그는 통합과 공동(共同)이라는 이 10년 사이에는 시대에 뒤떨어지듯이 1980년

대로 퇴보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1990년대의 합병붐은 일부는 1980년대의 리스트럭처링(사업재구축)에 대한 반동이다. 몇년 동안이나 코스트 삭감으로 이윤을 짜낸 후에 많은 기업들은 성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맥킨지사의 Emnius Bergsma씨는 설명한다.

그러나 투자에 의해 내부적으로 수익을 늘리려면 5~6년, 아니 7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Bergsma씨는 알맞은 해결책으로써 취득을 들 수 있으며 성장이라는 귀찮은 문제를 당분간은 멀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컴퓨터의 발전에 의해 거대한 성숙기업이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가 빠른 신규 참여자에게 길을 열어줄 시대가 왔다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하이테크의 도움에 의해 다수의 거대합병에 박차가 가해졌다.

은행업 분야에서는 자동예금인출기(ATM), 전자 송금 그리고 온라인 banking의 가능성에 의해 지점의 존재가 점점 성공과는 동떨어진 것이 되었다.

현재 진행중인 큰 통합의 파도를 헤치고 살아남는 은행은 기술적인 효율성을 충분히 활용하고 규모의 경제를 향유할 것이다. 통신분야에서는 대대적으로 선전되고는 있지만 명백하게 되어 있지 못한 정보 슈퍼하이웨이 불확실하게

탄생했기 때문에 미디어의 거인을 규모의 존재 확대로 몰고 가게 되었다.

사실 뭐가 일어날 지 아무도 모른다. 오늘날 통신회사에 있어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현재 상태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펜실베니아주립대학 Faulhaber 교수(경영학 담당)는 말한다.

기술의 창조자는 취득을 보강하기 위한 유저(User)와 같은 것이다. 경쟁자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맞설 힘을 추구하고는 것처럼 합병의 파도는 소프트웨어산업에 잔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극히 최근의 일인데 IBM사가 Lotus 사와의 거래를 발표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업활동의 개시가 차단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캘리포니아주 소재의 마케팅 컨설턴트로 벤처 캐피터리스트인 Mckenna 씨는 PC(퍼스널컴퓨터)를 포함해 많은 산업에서는 시장점유율 1위인 기업은 여전히 다른 업계에 소속되어 있다고 말한다.

여기저기에서의 신규경쟁의 압력을 의식하고 있는 규제자는 보다 큰 기업을 위해 더욱 문호를 개방했다. 작년 의회가 각 州간의 은행업에 관한 제한을 완화했는데, 그것은 Nations Bank에 의한 확대를 쉽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TV 네트워크에 의한 스튜디오

오 소유자와의 제휴는 TV 네트워크에 의한 프로그램 제작의 소유와 신디케이트화(기업연합화)를 방해하고 있던 규제 소멸을 이용한 것이다.

그리고 워싱턴에서 심리중인 소송은 새로운 거대기업의 탄생으로 연결되게 될 것이다. 의회가 글래스 스티달법을 폐지하면 은행은 주식중매업무(株式仲買業務) 등의 금융서비스를 도입하려 할 것이다.

통신규제 개혁법안은 머지않아 클린턴 대통령의 집무실에 도래할 전망이다. 이 법안은 미디어, 오락산업 및 전화회사 간의 광범위한 합병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다.

반트러스트(Trust: 시장의 독점과 기업합리화를 목적으로 한 고도의 기업합동 형태) 분야에서는 클린턴 정권은 전정권(공화당)보다도 의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려 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해 홈뱅킹용 소프트웨어 대기업인 Intuit사와의 거래를 중지시키려고 압력을 가했다.

사법부는 타임 워너사에 의한 터너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사의 취득이 산하의 영화회사와 유선방송회사와의 통합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는 통합에 대해서는 이전보다도 훨씬 관대하다. 1960년대 동일산업(同一産業)의 기업 취득이 불가능했기 때

문에 일부에서 업무상으로는 관계가 없는 기업에 의한 Conglomerate(복합기업)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경쟁적 환경 속에서는 반경쟁적이었던 것이 경쟁적일지도 모른다고 「Mergers & Aquisitions」지의 편집자인 Sikora씨는 설명한다. 기업은 합병을 하기 위해 예를 들면 자금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는 재무환경이 좋지 않다. 월스트리트의 활기 있는 시장에서는 기업 바이어가 주식에 돈을 쏟아붓는 야심적인 지정가(指定價)를 행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지난해 9월에 체이스 맨하탄 은행/케미컬은행, 타임 워너사/터너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사의 인수에는 현금이 아니라 주식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디즈니사의 인수처럼 현금을 필요로 할 때도 공급량은 충분하다. 은행, 기업 그리고 Mutual Fund(개방형 투자신탁)의 재산은 모두 팽창하고 있다고 Deloitte & Touche 사무소의 Alper씨는 특필했다.

1995년 대형합병 소동은 세력을 늘리고 있다. 경쟁자가 팽창하는 것을 본 기업으로서 합병 충동은 억제할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 기업은 그것을 생존의 문제로 생각해 알맞은 표적 모두가 사라져 버릴 때까지 합병에 가담할 기회를

포착하게 된다. 합병이 합병에 불을 지르는 것이 되어 거래 성립 속도는 향후 수개월은 빨라질 지도 모른다.

지난해 10월 19일자 피넬설 타임즈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은행 Wells Fargo(샌프란시스코 소재)가 경쟁자인 First Interstate(로스앤젤레스 소재)의 주식 공개 매입(총액 103억 달러에 달함)을 개시했다.

이 신문은 이 취득이 체이스 맨하탄은행과 케미컬은행과의 합병에 대항하는 것으로 그것도 드물게 적대적(敵對的)인 것이었다. 실현되면 미국 전체의 8위, 서해안에서 제1위의 은행이 탄생된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24일자 헤럴드 트리뷴지는 이번 여름 Bank America와 Nations Bank(노스캐롤라이나주 소재)가 합병 가능성에 대해 협의했다고 보도했다. 만약 합병이 실현되면 자산이 400억 달러 이상인 미국 전체 1위의 은행이 탄생하게 된다(참고로 체이스 맨하탄은행과 케미컬은행과의 합병 후 은행자산은 약 300억 달러임).

(1995. 9. 11. U.S.News & World Report)

1995년도 미국 반트러스트법 집행 상황

사법성 반트러스트국 관계

1995년의 하이라이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의 동의판결 수속을 통한 소송에서 승소한 일이다. 워싱턴 특별구 연방고등법원은 '다니법'에 기초한 동의판결안에 관하여 연방법원 판사의 심사권한에 제한을 설정했다.

동법원은 연방지법(스포 킹 판사)에 의한 동의판결안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 재판관이 정부측(사법성 반트러스트국)의 주장을 평가하기 위하여 동의판결안의 전제가 된 소장의 범위를 넘어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이를 취소하였다.

반트러스트국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반트러스트법 집행의 제2라운드를 개시하였다. 1995년 5월, 반트러스트국의 제소에 이어 '소프트웨어'의 거인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20억 달러를 상회하는 인튜이트 사(개인용 재무 소프트웨어에 있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유일한 경쟁자)의 취득을 단념하였다.

또한 반트러스트국은 '마이크로소프트·네트워크'의 가동시 마이크로소프트 사에 의한 온라인 시장에의 참입에 관한 심사에 대하여서는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

1995년에 주목을 모은 사건으로는 전 미국 변호사협회(ABA)에 의한 법과대학(Law School)의 인가 수속과 관련된 건이 있다. ABA는

인가기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며 교수진의 보수와 편익을 부당하게 끌어올린 혐의에 대하여 동의판결하는데 합의하였다.

작년에 반트러스트국이 제소한 사건수는 재작년과 비교하여 격감하였으나 1995년말에는 감소세가 멈추었다. 1995년에 들어와서 반트러스트국은 참신한 사건을 제소하였다.

1995년 1월, 반트러스트국은 가스·파이프 라인 운영회사가 '메타' 설치를 서비스하는 조건으로 천연가스 채취 서비스를 제공한 '끼워팔기' 혐의와 전 미국 1위의 특수 완구 회사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하여 동의판결을 하게 되었다. 전 미국 자동차 딜러협회에 의한 수평적 경쟁제한의 혐의에 대해서도 이를 제소하였다.

합병에 대해서는 아이오와주 '듀부큐'에 2개소밖에 없는 급성질병치료 병원의 합병사건은 지리적 시장을 적절히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항공운송업 및 빵제조업의 취득사건은 동의판결로 종결하였다.

또한 아칸소 주 북서부에 있는 신문사의 취득에 대하여서는 반트러스트국 외의 개인도 이를 제소하였다.

세계 최대의 전기통신업자 3사는 45억 달러에 이르는 합작회사 설립 계획에 대하여 반트

러스트국과 화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하는 데 동의하였다.

연방거래위원회(FTC) 관계

1995년 4월 비토후스키위원장이 취임하였다. FTC는 반트러스트법과 소비자보호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여왔다. FTC는 지난 가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경쟁의 글로벌화와 기술혁신에 수반한 경쟁의 성질이 변화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기업, 산업계, 소비자 단체, 학술연구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다.

FTC는 1995년에 취급한 사건의 대부분이 합병에 관한 것으로 그 중 6건의 동의심결안건이 의약품업계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방위산업에서 90억 달러를 상회하는 취득, 2사 밖에 없는 전신환 회사간의 합병(취득가액 67억불)을 취급하였다.

FTC는 병원합병에 관하여 긴급정지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

합병 이외의 사건으로는 리복사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하여 심판개시 결정을 들수 있다. 극히 최근의 일로서 Del Computer Company는 업계의 규격 설정 수속을 방해함으로써 거래를 제한하였다 하여 동의심결하는데 동의하였다.

반트러스트 집행에 있어 소비자보호 관계의 사건수가 증가하였다. FTC는 전화권유상법(電話勸誘商法) 외에 건강 표시도 법집행의 중점이 되었다. FTC는 영양, 칼로리 및 지방분의 함유량에 관한 표시를 문제시하여 다수의 식품메이커와 동 광고대리점을 묶어서 심사수속을 개시하였다.

이외에 심결위반에 대하여 FTC 사상 최고의 민사 벌금 275만 달러를 부과하였다.

FTC는 1995년중 규칙 7건, 가이드 8건 정책 표명 수건을 폐지하였다. 극히 최근 FTC는 급속 냉동 스프레이, 글라스섬유제커텐, 쌍안경, 침대, 테이블크로스 및 확장식 의자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규칙의 제정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전화권유 판매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표하였다. 동 규칙은 199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였다.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합병사건의 동의심결중에 자동적인 사전승인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을 중지키로 하였다. 또한 심결은 20년을 경과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FTC는 어떤 종류의 합병은 '하트·스코트·로데이노' 법에 의한 심사수속의 적용을 면제하는 규칙을 제안하였다.

주(州) 단계의 반트러스트법의 집행

전국사법장관회의(NAAG)는 1994년 말에 수직적 제한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공표하고, 최종적으로 1995년 3월에 이를 채택하였다. 1995년에는 이외에 다수의 주가 개별적으로 연방 반트러스트법 집행당국과 제휴하여 반경쟁적 행위를 제소하였다.

뉴욕주는 백화점의 합병을 제소하고 화해하고자 하였으나 국내대형 조식용 '시리얼' 제조 2사에 대한 합병에 관해서는 패소하였다. 미조리주에서는 진료소를 운영하는 내과의 그룹이 주와의 동의판결을 하면서 환자에 대하여 진료소내의 약국 또는 부대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제해서는 안되도록 하였다.

펜실바니아주는 FTC에 의한 승인 후에 효율성의 보증을 조건으로 2개 병원의 합병을 인정하였다. 또한 펜실바니아주는 부권소송으로서 손해배상과 부권정지를 구하기 위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특수완구 제조업자는 보상금으로 27만 5,000달러를 지불하고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데 동의하였다.

1994년에서와 마찬가지로 1995년에 있어서도 연방과 주에 의한 반트러스트 합동심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코네티컷주와 미조리주에서 관리의료계획(管理醫療計劃)의 발전을 저지하고자 공모를 하였다

하여 의사와 병원에 대하여 집행소송이 제기되었다.

플로리다주와 연방정부는 합동으로 폐기물처리회사에 의한 경쟁회사의 취득을 제소하였다. 최근 합중국 정부와 텍사스주는 89억 달러를 상회하는 스코트페퍼사와 킨벌리·크라크사와의 합병에 관하여 화해심결을 하였다.

FTC와 주는 협력을 행하고 있다. 리복사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에 관한 주와 동사와의 화해는 최종적으로 승인되었다. 또한 FTC는 1995년에 FTC와 주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합병심사에 관한 협력을 보다 강화하게 될 정보공유 방침을 공표하였다.

(1996. 1. 4. Trade Regulation Report 401)

미국 제지 메이커의 합병 동의판결로 종결

사법성 반트러스트국과 텍사스주 사법장관은 합동으로 제지제조회사의 합병사건을 심사하여 왔으나 이번엔 동의판결에 합의했다고 발표하였다. 당사자인 킨벌리·크라크사(텍사스주 달라스 소재)는 얼굴용 화장지(Tissue)에 대하여 '크리넥스' 유아용 화장지에 대하여 '하기스'라는 브랜드로 제조하고 있다.

또한 스코트·페퍼사(플로리다주 포가 레이트 소재)는 얼굴용 화장지에 대하여는 '스

코트·티-즈' 유아용 화장지에 대하여서는 '베이비·후렛쉬·와쉬·아·파이·베이비'라는 브랜드로 제조하고 있다.

소장에서 반트러스트국은 본건 합병을 인정하는 경우 합병 후의 회사는 얼굴용 화장지에서 60%, 유아용 화장지에서 55%의 시장점유율이 되어 합병 후의 회사는 얼굴용 화장지 국내시장(총매상액 13억 4,000만 달러) 및 유아용 화장지 국내시장(총매상액 5억 달러)에 있어 가격을 인상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경쟁을 감쇄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정 조치안의 개요는 다음 내용과 같다.

① 당사 회사는 스코트·페퍼 사의 얼굴용 화장지 및 유아용 화장지의 브랜드를 분리하여야 한다.

② 당사 회사는 유아용 화장지 등의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스코트·페퍼 사의 '도바' 공장(델라웨어주 소재)을 분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③ 당사 회사는 스코트·페퍼 사의 위스콘신 주 마리네트 및 뉴욕주 휘드·에드워드에 소재하고 있는 공장과 킴벌리·크라크 사의 위스콘신 주 네나에 소재한 '레이크뷰' 공장 및 '프드카·글로브' 공장의 4공장중 큰 공장을 분할하지 않으면 안된다.

본건 발표에 있어 빙가만 반트러스트국장은 얼굴용 화장

지나 유아용 화장지는 전국의 수백만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가정 필수품의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는 합병은 인정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텍사스주 사법장관은 본건 동의판결에서 당사자인 스코트·페퍼 사의 공장 매각을 의무화 한 것은 얼굴용 화장지와 유아용 화장지의 시장이 변함없이 경쟁적으로 되어 제품의 가격이 변함없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언급하였다.

본건에 관하여는 60일간의 Public Comment를 받은 후 법원의 수속을 경유한 후 동의판결을 하게 된다.

(1995.12. 14. Anti-Trust. Trade Regulation Report)

미 법무부, 폭약 제조업자에 1천만 달러 벌금

미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은 세계적인 상업용 폭약제조업자에 의한 가격 카르텔 등을 적발하여 기소하였다. 사건의 개요 등은 다음과 같다.

(1) ICI Explosives USA Inc.에 대한 건

미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은 1988년 가을부터 1992년 중반까지의 사이에 서부 켄터키주, 남부 인디애나주 및 남부 일리노이주에서 판매된 상업용 폭약의 가격카르텔에 참가하고 있었다고 하여 ICI

Explosives USA Inc.(달러스 소재)를 기소하였다.

이 회사 및 카르텔 참가자들은 공모하여 어떠한 종류의 상업용 폭약의 가격 인상을 검토한 후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일정한 고객에의 입찰 또는 할당에 대하여도 합의하고 있었다.

고성능 폭약 등 상업용 폭약은 석탄 및 금속의 채굴업 및 채석·건설업에 사용된다. ICI Explosives USA Inc.는 8월 22일 유죄의 인정을 행하고 1,0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할 것에 동의했다.

(2) Withers Waller Caldwell Jr.에 대한 건

Withers Waller Caldwell Jr.(ICI 사의 부사장)은 지난해 8월 21일, 유죄의 인정을 행하고, 미조리 주의 납채굴과 테네시주 아연 채굴을 위한 상업용 폭약의 판매를 포함하는 입찰담합에 관하여 5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할 것에 동의했다.

미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에 따르면 Caldwell은 Dyno Industries(USA) Inc.와 공모하여 Doe Run Company(미조리 주의 아연채굴업자) 및 Asarco(테네시 주의 아연채굴업자)에 대하여 고의로 높은 비경쟁적인 입찰가격을 제출했다.

(3) Dyno Nobel 사에 대한 건

미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은 경쟁자와 공모하여 서부 켄터키 주에서 다이내마이트 등의 상업용 폭약의 가격을 고정하고 증부 텍사스의 3개 석탄석 채석장용 폭약의 판매에서 경쟁을 배제하였다고 하여, Dyno Nobel 사(노르웨이의 Norsk Hydro 사의 미국 자회사)를 기소하였다.

동 회사는 지난 해 9월 6일, 유죄의 인정을 행하고 1,5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할 것에 동의하였다. 이 벌금액은 반트러스트 형사사건으로서 한 피고인에 과해진 것으로서는 최대의 것이다.

또한, 폭약의 판매업자인 Mine Equipment and Supply 사(Dyno Nobel 사가 일부 소유하고 있음)도 똑같은 소송 원인으로 기소되어, 유죄의 인정을 행하고 19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할 것에 동의하였다.

(1995. 10. 7. Financial Times, 국 제상사법무 Vol. 23, No. 10)

AT&T 사의 분할

미국의 거대전화회사인 AT&T사는 지난해 9월중순, restructuring을 목적으로 한 분할을 발표했다. 이 분할에 대하여 「The Economist」지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앞으로 10년간 전기통신만큼 대규모의 변혁에 직면하고 있는 업계는 그리 많지는 않다.

전기통신은 몇 년 동안 시장의 갑작 경기, 비용 삭감, 고이익으로 기분 좋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지금 이러한 것 모두가 많은 나라 정부가 경쟁 관계 사건을 조사했던 때와 같이 위협받고 있다. 미국 만큼 강력하게 경쟁을 촉진하는 나라는 드물다.

미국 상하 양원은 장거리전화회사, 지역전화회사 및 유선 방송회사가 상호의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을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AT&T 사를 3분한다는 결정은 시대의 요청이지만 경고도 있다. 세계 제2위인 이 전기통신회사는 한바탕 소동을 준비하고 있다. 고객은 확실히 승자일 것이다.

AT&T 사는 오랜 기간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 왔다. 1984년에 미국 법무부가 AT&T 사에 시내전화시장으로부터의 철수를 명한 이래, 동사는 장거리전화 및 국제전화에 전념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미국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내전화는 독점이라는 보호를 받는 한편, 장거리전화는 경쟁이 행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AT&T사는 지금까지는 그러저럭 쾌적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동사의 장거리전화 부문은 시장 점유율이 60 퍼센트이고, 동사의 영업 이익의 4분의 3 이상을 산출하고

있었다.

AT&T 사는 각자가 배려를 하여 다른 회사를 대우하면 뜻을 같이 하는 경쟁자 3사가 쾌적한 생활을 누릴 것을 깨닫고 있었다. 적어도 10년간, AT&T 사의 요금은 주요 경쟁자인 MCI 및 Sprint 사의 것과는 밀접히, 즉 낮기는 하였으나 미미하게 움직였다.

이들 3사 전체가 장거리시장의 과잉 설비가 증가하였다는 것과 한계 비용이 작다는 것 때문에 가격 경쟁이 모험이 될 우려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새로운 전기통신법안은 이와 같은 잘 손질된 보트에 요동을 가하는 것으로 된다. AT&T 사와 그 동업자는 장거리전화회사가 지역전화사업에의 진입 허가를 받을 때까지 지역전화사업이라는 독점으로 보호받는 이익을 올리고 있던 지역전화회사가 장거리전화시장에의 진입을 인정받는 것은 아닌가 하고, 몇 개월간 우려를 표명해 왔다.

AT&T 사는 통신기기와 컴퓨터 사업을 분리하기로 결정한 후 자유로이 직접 지역전화회사에 도전할 수 있다. 전기통신입법이 통과되면 AT&T 사는 McCaw Cellular사로부터 1994년에 구입한 거대한 무선전화사업과 어쩌면 Time Warner 사와 같은 유선시스템의 운영사업자와의 제휴 두

가지를 이용하여 지역전화시장에 진입하여 직접 미국민과 접촉할 수 있는 것으로 된다.

미국민의 약 40퍼센트는 AT&T 사가 지역전화회사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잠재적인 기기 구입자의 비위를 맞추는 필요에 사로잡히지 않고 AT&T 사는 미국 내와 해외 쌍방에서 뛰어난 경쟁자로 될 것이다. 경쟁에 대하여 닫힌 채로 문호에 대하여는 해외기업 및 미국 정부가 점점 심하게 비난할 것이다.

모든 나라의 전화 이용자들로서는 이러한 것은 낭보이다. 지구상 어디에서도 전화 이용자들은 장거리전화와 국제전화에 거액의 돈을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전화 이용자들이 전화회사를 선택할 기회는 거의 없다. 정부가 대규모의 국내전화회사를 소유하고 그 이익의 일정 부분을 수령하고 있으므로, 정부로서는 경쟁을 도입하여 가격을 인하하는 것에 대하여는 찬반 양론이 상반되고 있는 상황이다.

활기분해진 AT&T사는 경쟁을 도입하여 가격을 인하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할된다고 하여도 전기통신사업에서의 경쟁에 따른 폐해적 국면을 설명하기에는 동사는 너무 크다. 그 규모는 장점이다. 고정비용이 커지고 한계비용이 작은 산업은 경

쟁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신규진입은 단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보다 많은 사용자들과 접촉하면서 네트워크는 더욱 번영한다. 의회의 판단에 의해 자유경쟁이 행하여지면 전기통신시장의 사업자는 지금보다도 적은 몇 개 사로 될지도 모른다. 그러한 것은 미국과 같은 거대시장에서는 문제는 아니다. 더욱 소규모인 국가에서는 장기적으로 보아 경쟁을 유지하며 이어가는 것은 어렵다.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은 AT&T 사의 분할 발표에 대하여 지난해 9월 20일, 다음과 같은 신문 발표를 하였다.

“AT&T 사의 분할은 현재 전기통신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격변을 반영한 것이다. AT&T 사의 제조와 통신 서비스의 분리에 따라 AT&T 사 내부의 수직적 통합의 측면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 이 업계는 경쟁의 보호에 관하여 우리들과 광범하게 관계되어 왔으므로, 우리는 경쟁상 관점에서 영향을 줄 모든 주요 동향을 감시하며, 크게 관심을 갖고 이 조치를 심사할 생각이다.

종합적으로 보아 이러한 유형의 기업분할은 중대한 반트러스트 우려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반트러스트국은 본건 분할을 심사할 것이며, AT&T 사가

당사자인 반트러스트 동의판결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신중히 판단할 생각이다. 특히, AT&T 사에 의한 McCaw Cellular Communications Inc.의 취득과 1984년에 AT&T 사를 해체한 최종판결(MFJ)로서 알려진 미국 대 Western Electronic Co. 사건 판결을 검토하게 된다.” (1995. 국제상사법무 Vol.23, No.11)

규제완화 요청서 공표, 독점법 적용제외 전폐 논의 활발해져

미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10시(한국 시간 23일 오전 0시), 일본 정부에 제출한 규제완화 요청서를 공표했다. 유통, 보험, 통신 등 12개 분야에 대하여 요청을 하였는데, 규제완화를 실시한 후 자유경쟁을 보증할 정책의 테두리에 관해 구체적인 제언을 포함한 것이다.

재판매가격유지를 용인하는 독점금지법의 적용 제외 제도에 대하여 98년 말까지 전폐를 요청한 외에 기업의 담합의 배제를 목표로 한 ‘통보 촉진’ 제도의 도입 및 일본의 공정취인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 정부는 일·미 포괄경제협정의 규제완화·경쟁정책분야의 작업부회를 내달 상순에 열 예정이다. 미국 측은 요청서를 기초로 일본측

의 대응을 압박할 방침이며, 일본 소비자의 지지 획득을 노리고서 내용을 공개할 것이다. 요청서에는 경쟁정책 항목에 역점을 두고 있다.

독금법 적용 제외에 대하여는, 98년 말까지 폐지를 전제하고, 96년 말까지 제도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구체적인 업종에 대하여는 특정을 회피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적용제외의 전 분야를 대상으로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담합의 배제에 관하여는 수사당국의 작업 효율을 높일 목적으로 '담합 핫라인'의 설치를 요구하였다. 이는 담합의 당사자 및 제3자의 통보·밀고를 촉진하는 제도로서, 카르텔 행위의 적발로 실적을 올리고 있는 미국 법무부와 같은 형태의 제도를 모델로 하고 있다.

또 독금법 위반을 입증하기 쉽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원고)의 손해증명의 간소화를 요구하였다. 소송 수수료의 감액 및 절차 간략화 등 민사소송 제도의 개선에 대하여도 상세한 제안을 포함한다. 이는 독금법에 관한 민사소송을 장려하여, 기업 및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서로 감시하는 미국류의 '소송 사회' 에로의 이행을 촉구하는 측면이 있다.

(1995. 11. 23. 일본경제신문)

영국편

영국의 British Sky Broadcasting Ltd. 심사, 유선방송의 경쟁상 우려에 초점

영국의 경쟁당국은 루퍼트 머독이 통제하는 News Corp. 가 지분 40%를 가지고 있는 위성 텔레비전 네트워크인 British Sky Broadcasting Ltd.에 대한 심사를 개시하였다.

공정거래청의 이번 심사는 머독이 벌이는 사업에 대한 영국 유선방송회사들의 몇 달에 걸친 불평에 뒤이은 것이다. BSKYB 사는 위성방송 수신자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알려진 대로 영국 유선방송산업의 주요한 프로그램 공급업자이다.

유선방송 사업자들은 BSKYB 사가 유선방송의 비용을 높게 유지시켜 머독의 위성방송 서비스 이용을 증대시키고자 하여 자신들에게 과도한 이용료를 청구하고 있다고 오랫동안 불평하여 왔다.

Bell Cable Media PLC의 사장인 Alan Bates는 "이는 매우 불평등한 경쟁의 장이며 독점의 남용이다."고 말하면서, "이 심사는 매우 긍정적인 것이다."라고 했다.

1년 전 민영화된 이후 67%

상승했던 BSKYB의 주가는 지난 해 12월 1일(금요일)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거의 6펜스 하락한 428.5펜스(6.57달러)로 떨어졌다.

분석가들은 종결되기까지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당해 심사가 영국 증권시장 우량주 중의 하나인 당해 회사의 주식에 상처를 입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런던의 한 방송 분석가는 "시장은 규제 환경을 매우 우려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는 주가에 반영될 것이다."라고 했다.

성명서에서 BSKYB 사는 유선방송회사에 대한 자신의 가격 설정이 반경쟁적이라는 것을 부인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불평은 시끄러운 소수의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만 한정된 것이라고 하였다. "BSKYB 사는 이 나라의 대다수 유선방송 사업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이 회사는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유선방송 사업자들의 주요 관심은 그들의 네트워크를 설립하여 고객들에게 봉사하는 데보다는 규제절차를 이용하여 그들의 사업을 확장시키는 데에 모아져 있다."고 했다.

BSKYB 사와 다수의 유선방송 사업자들간의 긴장 관계는 머독이 영국의 2대 유선방송 사업자들과 프로그램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인 7월에

처음 나타났다. Nynex Corp. 영국 지사 및 Telewest International 사와의 이 계약은 유선방송산업의 거인들인 이들에게 유리한 이용료를 책정하였지만 이는 또한 이들이 유선방송 전속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맺을 능력을 제한하고 있었다.

Bates 같은 유선방송 임원들은 당해 계약은 유선방송산업이 BskyB 사의 프로그램 공급 독점과 맞서 경쟁할 능력을 마비시키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분석가들은 양 진영간의 다툼은 규제당국의 결정에 관계없이 몇 달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런던에 소재한 Hoare Govett 사의 분석가인 Robert Jolliffe는 “이는 새로운 현안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

(1995. 12. 4.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영국 공정위, 엑소 UK를 조사

영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3일, 미국 석유회사 엑슨의 영국 관련회사 ‘엑소 UK’ 계열의 기술린 가격 인하를 공정경쟁상 문제로서 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는 영국에서 최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슈퍼마켓의 기술린 판매대 병행설치가 배경으로 되어, 엑소가 원가 이하의 염가판매로 슈퍼에 대항하였기 때문에 그

여파로 주변의 독립계 중소 판매점을 폐쇄로 몰아 넣었다고 하는 영국 석유소매협회(PRA)의 신청에 기초하고 있다.

엑소의 가격 인하 캠페인 ‘price watch’는 금년 8월말에 스코틀랜드 및 영국 중부의 216개 계열 판매점에서 시험적으로 시작되었다. 일부에서는 반경 약 3킬로미터 권의 어떠한 다른 회사의 판매점보다도 저가격으로 하는 등 강경한 가격 인하를 전개하였다.

브르스 페터 PRA 이사장은 “이는 무엇보다도 저가 판매를 시작하고 있는 슈퍼의 가일층의 가격 인하로 이어졌고, 엑소도 이에 다시 대항하여 가격경쟁은 격화의 길을 걸었다.”라고 한다.

PRA는 엑소가 부당한 가격경쟁을 초래하여 ‘약탈적 가격형성’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영국 내 약 2천1백개의 엑소 계열 판매대 전체에서 마찬가지로 가격을 인하하면 독립계 판매대는 “1년 이내로 현재의 약 반수인 5천 개 점포로 감소할 것”이라고 페터 이사장은 우려하고 있다.

(1995. 11. 24. 일본경제신문)

North West Water 사, Norweb 사와 기업결합

영국의 North West Water 사는 지방 전기회사인 Norweb 사와 기업 결합함으로써 영국

최초의 다중 독점사업체를 창설하게 될 18억 3천만 파운드(29억 달러) 상당의 기업결합 신청에 대한 최종적인 규제장벽을 해소하였다.

영국 정부는 당해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청(OFT)의 결정을 번복하였다고 밝혔다. OFT는 당해 신청에 대하여 독점·기업결합 위원회에 의한 조사를 촉구했었는데, 복합적인 공공사업 및 관리상의 효율 규제에 관한 우려를 언급하였었다.

통상산업부 장관인 Ian Lang은 자신은 OFT의 조언을 “경솔히 기각하지는 않았으며, 사건 회부 여부를 고려함에 있어 나의 주요 관심은 언제나 경쟁의 유지이다”라고 말하였다.

지난 해 11월 3일에 공표된 당해 결정은 분석가들에게는 예상된 것이었으며 11개월 동안 8번의 지방 전기회사(RECs)의 매수 시도가 있었던 이 부문에서 유사한 매수청구가 일어날 배경을 조성하고 있다.

우리들은 North West Water 사의 Norweb 사 매수청구와 유사한 REC와 수도회사간의 기업결합이 더욱 많이 발생하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라고 Lehman Brothers 사의 공공사업 부문 분석가인 Philip Green은 말하였다.

Lang은 수도회사 담당인 Ian Byatt와 전기회사 담당인 Stephen Littlechild를 지지하였는데, 이들은 North West Water 사가 재원을 제한하며 규제당국이 시설관리회사의 비용에 관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수정 조항을 인정하는 데 동의하였기 때문에 당해 신청을 승인하였다.

“나는 당해 기업결합에서 발생하는 효율 및 비용 절감에 대한 정보에 적절히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Byatt는 말하였으며, 다음의 수도 가격 검토에서는 당해 이익이 소비자에게 이전되었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 어떤 절감액이든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적인 경매 입찰에서 North West Water 사는 United Utilities라 불릴 회사를 만들기로 한 Norweb 사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의 전기회사인 Houston Industries 사 및 Central and South West Corp.로부터의 경쟁 제안을 물리쳐야 했다.

(1995. 11. 3, 4.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영국 정부, 공정거래청의 심사 권한 강화를 제안

영국 정부는 공정거래청에 대하여 대폭적인 심사 권한을

부여하고 동청이 독점·합병 위원회에 의뢰하는 일이 없게 많은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제안을 할 예정이다.

‘에반스’ 경쟁·소비자 문제 담당 부임소장관은 정부가 공정거래청과 공정거래청 장관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동 장관에 따르면 공정거래청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독점·합병위원회에 의뢰 없이 신속히 다수의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쟁 문제를 심사하고 조치 방안을 시행함에 있어 단일 관청처럼 활동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또한 동 장관은 공정거래청의 판단이 쟁점이 될 때 독점·합병위원회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독점·합병위원회가 일차적인 재판소적 역할을 부여받도록 하겠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또 동 장관은 이러한 개혁으로 공정거래청과 독점·합병위원회 역할 조정이 이루어져 독점·합병위원회의 지위가 합병사건에 있어 상소 조직으로 변천된다고 언급하였다.

현재는 공정거래청이 합병이나 매수사건에 관하여 일차적인 심사를 하고 동건이 명백하게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될 때는 당해 안건을 독점·

합병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도록 무역·산업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는데 불과하다. 독점·합병위원회는 공식적인 청문을 하여 광범위한 공공의 이익 기준에 따라 판단을 내리고 보고서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푸리츠만 공정거래청 장관은 소비자에게 경쟁의 손실을 상쇄하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을 전제로 기업이 보다 자유스럽게 합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1995. 11. Doing Business in Europe No. 280)

서적 재판 협정 해소 결정, 대형출판사 6개사 이탈

영국에서 1세기에 걸쳐 지켜져 온 서적의 재판매가가격협정이 붕괴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출판사가 잇따라 협정으로부터 이탈하였기 때문에, 영국의 출판협회는 재판 협정을 사실상 해소하기로 결정하였다.

가격 설정의 자유화는 부진 상태인 서적 산업을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에 대형서적 체인 및 슈퍼간의 가격경쟁에 개인이 경영하는 서점의 재산이 맞지 않게 되어,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여파가 미칠 것이라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영국의 서적재판협정에서 출판사와 소매점은 무기한의 재

판최저가격을 결정하여 왔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격 결정으로부터 4개월 후에 통신판매에서의 특별할인이 인정되는 것 외에 출판사가 승낙하면 재고 처분 등을 위한 할인이 가능하다.

이번에 협정으로부터의 이탈을 표명한 업체는 하퍼-콜린즈, 랜덤-하우스 등 영국 대형 출판사 6개사이다. 매상이 신통치 않은데다 작가에의 선불의 증가, 용지 가격의 인상 등 험준한 수익 환경이 배경이다. 하퍼-콜린즈 사장은 "서적이 콤팩트디스크(CD) 및 비디오 등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같은 형태로 할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1년 전에 협정을 이탈한 호더-헤드라인 사 발행의 3개 서적은 대형 슈퍼 2개사에서 희망소매 가격의 5할로 판매된 결과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에 비해 매상이 8할 증가하였다는 자료도 있다.

대형서적 체인인 WH 스미스 및 대형 슈퍼인 아즈더 등은 대규모의 서적할인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개인서점의 도태 및 인기 서적의 가격 인하의 결손 보충이 될 다른 서적의 가격 상승을 염려하는 목소리는 높지만, 어쨌든 서적의 본격적인 가격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995. 10. 2. 일본경제신문)

일본편

공취위, 지주회사 부분 해금 결정 - 4 유형 제시

공정취인위원회는 95년 12월 25일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설립을 금지해 왔던 지주회사의 부분 해금을 정식으로 결정했다. 동 위원회는 「독점금지법 제4장 개정문제 연구회」(회장 館龍一郎 동경대 명예교수)에 사업부문을 자회사로 나누어 총괄할 경우 등에 한하여 지주회사의 설립을 인정하는 연구회 보고안을 제시, 승인을 얻었다. 공취위는 금년 2월에 지주회사의 부분 해금과 공취위의 조직 강화를 포함한 독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연구회의 보고안에는 지주회사의 설립을 공취위의 인가제로 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또, 지주회사에의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에 의한 기업 매수는 공취위에의 사전 신고제 또는 인가제로 할 것을 명기하였다. 공취위는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매수를 인정할 때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것이다.

설립을 인정할 지주회사의

유형에는 분산한 자회사의 총괄회사 및 금융지주회사, 벤처캐피탈이 주식 보유 비율을 높여 지주회사로 될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회사가 지주회사로 되는 경우의 네 유형을 제시했다.

보고서의 원안에는 사업회사의 자회사로서 설치할 '중간지주회사'도 유형의 하나로 들고 있었으나 중간형은 분산 총괄회사의 응용 예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도 있어 명기하지 않았다.

(95. 12. 26. 일본경제신문)

NTT 분할 명기-일 행정개혁위 규제완화소위가 최종 보고

일본 정부의 행정개혁위원회 규제완화소위원회(椎名武雄 회장)는 95년 12월 7일, 전체회합을 열고 규제완화책의 최종 보고를 결정하였다. 내용은 12개 분야 53개 항목에 이르며, 초점인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일본전신전화(NTT)를 경쟁체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표현으로 NTT분할 방침을 명기함과 함께, 전기통신 시장에서의 진입을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우정성에 요구하였다.

증권업에서는 현행 면허제로부터 등록제로의 이행을 내세웠고, 지주회사의 전면 해금도 포함되었다. 신문 및 서적의 재판매가격 유지 제도는 "검토

과제로서 논의를 깊이 한다.” 고 하였으며, 농수산물 및 의료·복지 분야 등도 결론을 사실상 먼저 내놓았다.

행정개혁위는 지난해 12월 8일에 동소위원회의 보고를 받아 12월 중순을 목표로 무라야마 도이치 수상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정부는 금년 3월말부터 ‘규제완화 추진계획’ 개정을 위한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최종 보고는 정보·통신 분야에 관하여 행정의 진입규제가 자유로운 경쟁의 장애로 된다고 함과 함께 NTT가 독점적인 통신망을 갖고 있는 특이한 시장구조라는 것을 지적, 우정성이 주장한 NTT 분할과 NTT가 주장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수급조정조항의 철폐 등 모두를 포함하였다.

새로운 NTT의 존재방식에 관하여 지금까지의 논의에서는 중앙회사와 그에 연결되는 지방회사로 나누는 ‘분리론’과 지역마다의 독립한 회사로 나누는 ‘분할론’이 있었으나, 최종 보고에서는 ‘분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피하고, 분할론을 지지하는 방향을 시사하였다. 다만, 분할될 회사수 등 구체적인 분할 방법은 전기통신심의회(우정상의 자문기관)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에 그쳤다.

경쟁정책 분야에서는 독점금지법으로 규제되어 있는 지주

회사의 금지에 대하여 ‘사업전개를 부당히 제약한다’며 해금할 것을 제안하였고, 금융 분야에서는 증권업의 면허제도는 원활한 진입·퇴출에 조건을 붙이고 있다고 하여, 조속한 등록제의 검토를 구하고 있다. 동시에 시가 발행 공모증자의 가이드라인 철폐 및 운용규제완화도 구하고 있다.

저작물의 재판 제도는 “타당성에 대하여 계속 검토 과제로서 의논을 깊이 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공정취인위원회에서도 검토를 동시에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농수산물 분야에서는 농지법에서 인정되어 있지 않은 주식회사에 의한 농지의 보유에 대하여 폭넓은 검토를 행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쳤다.

의료·복지 분야에서도 영리법인 형태의 기업에 의한 의료기관의 경영에 관하여 중요한 과제로서 계속 검토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외에 ① 대규모소매점포법의 장래 폐지 ② 술·담배의 소매 판매 면허 및 인허가제도의 폐지 ③ 정기 주택 임대권의 창설 ④ 민간의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대상 범위의 확대 등을 포함하였다.

(95. 12. 8. 일본경제신문)

냉장창고협회, 배제권고 거부 공취위에 통지

생선, 식료품 등을 보관하는 냉장창고의 보관 요금의 인상을 둘러싸고 암묵적 카르텔을 결성하였다고 하여 공정취인위원회로부터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배제권고를 받은 사단법인 일본냉장창고협회(金田幸三 회장, 가입사 약 1,200개)는 지난해 12월 30일, 권고를 수락하지 않을 것임을 공취위에 통지하였다. 이를 받아 공취위는 재판의 1심에 해당하는 심판 개시 절차에 들어갔다. 앞으로 심판의 장에서 감독관청인 운수성의 행정지도의 존재 방식 등이 문제될 것이다.

공취위에 따르면 이 협회는 92년 4월에 열린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로 구성된 간부회에서 기본 요금을 약 8.8% 인상하였는데, 보관 요금의 다양화를 내세우고 있던 운수성의 의향을 받아 그 후 개최된 간부회에서 결정 내용을 수정하였다.

이들은 약 8.8% 인상을 주축으로 최고 9.6%, 최저 8.0%의 범위 내에서 5단계의 가격 인상률을 설정하는 것으로 하여 지난해 7월 31일부터 순차적으로 동 관청에 신고, 가격 인상을 하여 독금법 8조(사업사단체에 의한 부당한 거래 제한의 금지) 위반으로 배제권고를 받았다.

협회 측은 “각 사업자가 자주적인 판단에 기하여 운수성에 신고한 것으로서, 카르텔이

라는 결론에는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창고의 보관료는 변경시에 운수성에의 신고가 필요한데, 요금 설정을 둘러싼 카르텔은 독금법 적용의 대상이 된다. (95. 11. 30. 일본경제신문)

공취위, 宇都宮 담합 건설 106개사에 과징금 14억 8,800만엔 명령

宇都宮시 발주의 공공 공사를 둘러싸고 사단법인 宇都宮 건설협회가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배제권고를 받은 담합사건에서, 공정취인위원회는 8일까지 협회에 가입하고 있는 업자 106개 사에 대하여 총액 14억 8,825만엔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담합사건의 과징금으로는 과거 최고인 山梨縣 건설협회가 가입 373개 사에 대한 총액 18억 6,300만엔 다음이다.

납부명령을 받은 업체는 동경증시 1부에 상장된 東鐵工業을 제외한 전 宇都宮市 내의 업자들이다. 한 업자당 최고액은 1억 2,269만엔, 최저액은 66만엔이다.

공취위에 따르면 동 협회는 92년 4월, 宇都宮市 내에 있는 협회 임원실에서 개최한 회합에서 동 시가 발주한 토목·건축공사에 대하여 수주가격의 저락 방지를 위해 사전에 수주 조정을 위한 규칙을 책정하였

고, 같은 해 4월부터 93년말까지 이 규칙에 의한 담합을 되풀이하여 거의 모든 공사를 수주하여 왔다

과징금의 대상은 92년 4월 17일부터 93년 12월 27일까지 사이에 106개 사가 수주한 1,400건의 동 시가 발주한 공사(총액 489억엔)로서, 수주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되었다.

공취위는 94년 11월, 동 협회에 대하여 독금법 제8조(사업자단체에 의한 부당한 거래제한의 금지) 위반으로 배제권고를 하였고, 협회는 이를 받아들였으므로 이번의 납부명령이 이루어졌다.

권고시에 협회에 가입하고 있는 업자 수는 144개사였으나 38개 사는 수주 실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95. 11. 9. 일본경제신문)

공취위, 'ODA 담합'으로 상사·백화점 37개사에 과징금 1억 6,956만엔 명령

정부개발원조(ODA)를 둘러싼 담합사건에서 공정취인위원회는 25일까지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배제권고를 한 대형상사 및 백화점 등 계 37개사에 총액 1억 6,956만엔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하였다. 1977년에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종합상사가 과징금 납부명령

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명령을 받은 업체는 伊藤忠상사 및 三井물산, 住友상사, 丸紅, 三菱상사 등 대형·중견상사 34개사와 三越, 大丸, 伊勢丹 등 백화점 3개사이다. 과징금의 최고액은 兼松의 1,205만엔이고, 최저액은 金商又一의 70만엔이다.

공취위의 조사에 따르면 각사는 ODA의 기술협력 분야에서 국제협력사업단(JICA) 발주의 자재 및 기재 조달에 관련된 지명경쟁 입찰을 무대로, 87년 2월경부터 담합행위를 반복하여 왔다. 그간 기업 규모별로 1조, 2조, 3조로 조를 나누는 등 사전에 수주 예정사 및 입찰가격을 결정하여 왔다.

과징금의 대상은 91년 9월부터 작년 94년 9월까지 3년간에 발주된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각국 대상의 631개 기술협력 안전(총액 169억 7,650만엔)으로서, 각사의 수주액의 1%를 곱하여 산정되었다.

공취위는 각 사에 대하여 94년 9월, 독금법 위반 혐의로 일제히 현장 조사를 실시, 95년 3월말 독금법 3조(부당한 거래제한의 금지) 위반으로 37개사에 배제권고를 하였다. 각사는 위반을 인정, 권고를 응낙하였으므로 이번의 납부명령이 이루어졌다.

ODA의 수산 무상원조 안전에서 금년 3월 배제권고를 한

어망 제조업자에 대해서도 공취위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발할 방침이며, 산정을 서두르고 있다.
(95. 10. 26. 일본경제신문)

EU판

EU의 비교 광고 규제 방침

EU 소비자 문제 담당 각료 이사회는 1995년 11월 9일 비교 광고에 대한 규제 방법을 정비하기 위하여 부당 표시에 관한 지침 제 84/450호를 개정하기 위한 공통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독일, 필란드 및 스웨덴은 이를 반대하였다. 각료 이사회가 채택한 지침(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정의

비교 광고는 명시 또는 묵시를 불문하고 경쟁자 또는 경쟁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는 모든 공표문을 말한다.

(2) 이와 같은 광고가 되려면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지침 제 84/450호에서 정의된 소비자에게 오인을 주는 광고가 되어서는 안된다.

② 동일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거나 또는 동일의 목적에 봉사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비

교하는 광고이어야 한다.

③ 가격을 포함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에 필요하고, 관련되고, 그리고 증명 가능한 대표적 특색 한 가지 이상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어야 한다.

④ 광고주와 그 경쟁자에 대하여 또는 광고주와 그 경쟁자의 상표, 상품명, 로고, 심볼,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시장에서 혼동을 가져오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⑤ 경쟁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신용에 손상을 주거나 또는 중상을 입히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⑥ 경쟁자의 상품명 또는 이미지 또는 원산지의 명칭이나 시중에 돌아다니는 세평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부당 표시에 관한 규칙에 관하여는 관계되는 제3자는 부적절한 광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만을 신고하거나 법적 구제를 구하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가맹국은 특정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어떤 종류의 광고에 대하여도 금지시킬 수 있으나 비교 광고에 대하여서는 이상에서 규정된 것 이상의 제한적인 규칙을 시행할 수가 없다.

(1995. 11. 23. EU Update No. 73)

유럽위원회, 독·프 통신 합병 원칙적으로 인가 - AT&T 세력 등에 대응

유럽위원회는 지난 해 10월 16일, 독일 텔레콤이 계획하고 있는 기업간의 국제통신사업 합병회사인 아틀라스를 원칙적으로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통신규제의 자유화를 앞당길 것 등 유럽위원회가 제시한 조건을 독일과 프랑스 정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아틀라스는 96년초에 영업을 시작한다. 미국 통신사업자를 포함하는 유럽에서의 고객쟁탈전이 한 단계 격화될 것은 확실하지만, 아시아 시장을 둘러싸고 일본전신전화(NTT)와의 관계강화를 목표로 하는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이다.

유럽위원회의 Van Miert 위원(경쟁정책담당)은 독일과 프랑스의 통신장관, 독일 텔레콤, 프랑스 텔레콤과의 협의 후에 기자회견을 하여 원칙으로서 아틀라스 합병사업을 인가할 방침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를 18일의 유럽위원회 회의에 제안할 것이고, 다른 통신사업자로부터의 의향 청취 등을 거쳐 정식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 날의 협의에서 독일과 프랑스는 96년 7월부터 철도, 전력사업자 등에도 음성을 제외한 데이터통신사업에의 진입을 인가할 것임을 약속했다.

유럽연합은 98년부터 통신의 완전 자유화를 결정해 놓고 있지만, 이를 일부 앞당겨 실시하여 경쟁 원리를 조기에 도입할 움직임이다. 양 텔레콤의 자회사에 의한 데이터통신사업을 98년 1월까지 독립시키는 것으로 하여, 양 텔레콤이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굳히지 않는 것에도 동의했다.

아틀라스 계획은 미국 MCI와 영국 British Telecom(BT)의 연합인 '콘서트', 미국 AT&T와 유럽 4개국 통신사업자의 연합인 '유니소스'를 유럽 시장에서 격퇴하려는 전략적 제휴이다.

양 텔레콤은 아틀라스와 미국 스프린트의 합병으로 세계적인 규모로 기업통신시장을 노리는 '피닉스'를 구상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이 계획을 인정할 것인가를 미국 통신감독당국과 협의할 것이다.

미국 및 유럽의 기업연합은 급성장을 지속하는 아시아 시장의 공략을 목표로 하고 있어, NTT의 포함 여부가 열쇠가 된다. NTT는 자체로서는 국제통신사업에 진입할 수 없지만, 자회사로서는 가능하다. 유럽위원회는 아틀라스와 같은 국제적인 프로젝트의 경우 역내의 공정경쟁 확보의 관점에서 이를 인가할 것인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1995. 10. 17. 일본경제신문)

EU, Carnaud-Crown 기업 결합 승인

EU 반트러스트 담당 위원인 Karel Van Miert는 Crown, Cork & Seal Co.와 Carnaud Metalbox SA가 전세계에서 가장 큰 포장회사를 만들게 될 40억 달러 상당의 기업결합 계획의 주요 걸림돌을 제거했음을 암시했다.

Van Miert 씨는 이 회사들이 유럽연합의 승인을 얻는 대신에 5개의 에어로졸 캔 제조 공장을 매각하는데 동의했다고 말했는데, EU는 지난 해 7월, 당해 거래에 대한 심층조사를 개시했었다. 그는 제안된 자산매각이 당해 거래가 주식판 에어로졸 캔에 관한 유럽연합 시장에서의 경쟁을 왜곡할 것이라는 당해 위원회의 주요 우려에 대한 충분한 구체책이라고 말하였다.

Van Miert 씨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동료 위원들은 그들의 주간 정기 회의에서 당해 사건에 관해 결정을 내릴 것이다. 당해 위원회는 거의 언제나 경쟁 담당 위원의 권고를 지지한다.

Van Miert 씨가 브뤼셀의 유럽연합 산업장관 회의에서 이석하면서 기자들에게 행한 발언으로 파리 주식시장에서의 Carnaud 사 주식 가격은 4.3% 오른 213.90 프랑

프랑(43.74 달러)이 되었으며, 이는 8.90 프랑 상승한 것이다. 필라델피아에 본사를 둔 Crown 사의 주식은 뉴욕 주식시장 폐장 무렵에는 18%, 즉 62.5 센트 오른 35.125 달러에 거래되고 있었다.

지금까지 Van Miert 씨는 두 회사의 주식가격에 충격을 줄까 염려하여 당해 조사를 철저히 비밀에 붙여 왔었다. 그가 이 사건을 논의하려는 의도를 보인 것은 이제 그의 권고에 대해 거의 반대가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1995. 11. 7.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유럽위원회, 심사협력기업에 대한 면책방침(안) 발표

유럽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6일, 카르텔 사건의 심사에 협력한 기업에 대하여 면책을 주는 요지의 방침(안)을 발표하였다.

동 면책방침(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위법적인 카르텔의 존재에 대하여 상세한 정보를 유럽위원회에 제공한 기업으로서 다음 4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는 당해 기업에 대한 제재금을 전액 면제한다.

① 유럽위원회가 당해 사건에 관한 정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거나 또는 관계 기업에 대하여 행동을 취하기 전으로

서 제재금을 과할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단계에서 당해 기업의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

② 당해 기업이 당해 사건에 대하여 최초의 정보 제공자일 것

③ 당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 및 입증 자료가 유럽위원회에 제공되어 심사 수속의 전 과정을 통하여 전면적 협력이 되도록 할 것

④ 당해 기업이 당해 카르텔의 선두에 서거나 실행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어야 하며, 또는 다른 기업에 대하여 카르텔에 참가하도록 강제하지 않았어야 할 것

(2) 유럽위원회는 위반 기업에 대하여 행동에 옮긴 뒤라도 최초의 심사활동에 협력하고 카르텔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위반 행위를 확정하고 제재를 하는 데 충분할 정도의 사실의 존재를 인식시키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금을 최대 50% 경감해 준다.

상기 방침을 발표함에 있어 반·빌트 위원(경쟁정책담당)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① 지금까지 많은 기업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다. 이들은 심사에 협력하는 조건으로 면책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불가능한 상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가격결정이나 시장분할 같은 카르텔은 더

욱더 복잡해지고 있어 이를 적발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위원회가 위반 사건을 적발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카르텔은 중대한 경쟁법규 위반 행위의 하나이다. 면책방침이 있으면 지금까지와 같이 카르텔과의 싸움이 가능하다.

② 유럽재판소는 면책방침(안)에 관하여 각료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는 요지의 설명을 하고 있다.

③ 면책방침(안)에 관하여서는 각료 이사회, 구주 의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한 후 1996년 봄에는 시행하였으면 하는 생각이다.

④ 면책방침(안)에 관하여서는 미국사법성(반트러스트국)의 소추 면책방침을 참고하였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소추면제 방침이 적용된 후 다수의 내부 고발이 이루어졌다. 그 이전에는 1년에 1건 정도였으나 1개월에 1건 정도로 늘어났다. 심사 기간의 대폭적인 단축과 범죄의 억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1995.12. 7. BNA News · Agence Europe)

프랑스 수상, 경쟁법 개정을 공약

알랭 · 주삐 프랑스 수상은 지난 해 11월 27일, 가격 및 경쟁의 자유에 관한 1986년 12월 1일의 명령(프랑스의 독점금지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하였다.

의회에 제출하게 될 이 법안은 경제적 종속 상태에 대한 남용의 폐지, 명세서 작성의 간소화, 부당 염매 규제의 강화 외에 공기업이나 비영리 조직에 대해서도 공정경쟁을 하기 위한 조건을 정하고 거래절에 관한 규정을 고치고 또한 슈퍼마켓에 의한 인위적인 부당 염매의 남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 법안에 의하면 부당 염매에 대한 벌금의 최고액이 종래의 10만 프랑에서 5배인 50만프랑으로 인상된다.

수상은 개정안을 내면서 최근 슈퍼마켓이 급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손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의 소매업자를 포함하여 중소기업의 강화 계획을 포함하겠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소식통은 개정의 취지는 경쟁의 침해에 대해서가 아니라 소규모 기업이나 경제적으로 약한 기업은 어떤 종류의 남용 행위로부터(특히 소규모 소매업자의 남용 행위) 보호하는 데 있으며, 이는 경쟁에 있어 효율과 공정을 조화시킨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1995. 12. 7. ATRR)

캐나다 경쟁정책국, 관(管) 메이커에 고액의 벌금 부과

1995년 10월초에 캐나다 경쟁정책국의 형사집행과장이 BNA·ATR 잡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9월 27일 캐나다·파이프사(Canada Pipe Co. Ltd, 관 제조업자)에 250만 캐나다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동사는 U.S.Pipe and Foundry Co.(이하 U.S. Pipe 사라고 한다)와 캐나다 경쟁법 제 34조 제 1항 및 제 35조 제 1항에 위반되는 공모를 함으로써 음료수의 수송·배송용의 닥타일 철관의 공급과 판매에 관하여 캐나다에 있어 경쟁을 부당하게 감쇄하였다 하여 기소되어 유죄의 심결을 받게 된 것이다.

공모는 캐나다·파이프사 사장과 U.S.Pipe 사장이 합의하여 Construction Louisburg Ltd(캐나다·파이프사의 캐나다에 있어 주요 경쟁자)에 대한 닥타일 철관의 공급을 삭감한 행위와 관련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벌금액은 한 건의 소송사건에 부과된 것으로서는 사상 최고의 액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모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는데도 유죄 판결한 것도 처음 있는 사건이다.

캐나다 연방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보다 큰 고액의 벌금이 부과되었을 것이다. 피해자가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범죄는 중대한 것이다. 경쟁법 위반의 공모가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엄정하게 대처해야 하며 벌금액은 선례를 참고로 산정되었다.

본건은 미국 사법성(반트러스트국)이 제공한 정보를 기초로 심사가 개시되었다. 미국 사법성은 공모자에 대하여 소송 유지를 위해 충분한 증거가 없었으나 캐나다 경쟁정책국에 대하여 충분한 지원을 해주었다.

경쟁정책국 아태이국장은 이 사건에 관하여 미국 사법성과 캐나다 경쟁정책국이 협력하여 성공한 사례가 되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995. 10. 12. ATRR)

호주 연방법원, 건설자재업자에 가격 카르텔에 대한 벌금 부과

호주 연방법원은 95년 12월 4일, 호주의 대형건설자재회사 3사와 그 임원에 대하여 1989년에서 1994년 사이에 퀸즈랜드의 콘크리트 시장에서 가격 카르텔을 하였다 하여 합계 2,100만 호주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이들 3사는 Boral, CSR, Pioneer의 자회사이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호주의 경쟁당국, ACCC)은 제소에 있어 이들 3사가 카르텔을 결성하여 50회가 넘는 회합을 통하여 '푸리스벤' '골드코스트' 및 '도움바' 시장에서 레미콘의 기본 가격을 결정하고 3사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3사와 동 그룹은 과거에도 같은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받았으며, ACCC의 웰즈 위원장은 가격카르텔에 벌금형을 부과하였어도 가격 카르텔을 억제할 수 없으면 ACCC로서는 구금형을 소추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ACCC에 대한 카르텔에의 참가를 자백하고 정보를 제공한 기업에 대하여 법원은 합계 660만 호주 달러의 벌금을, 또한 Boral의 임원에 대해서는 20만 호주 달러를, CSR의 임원에 대해서는 10만의 호주 달러를, Pioneer의 임원에 대해서는 5만 호주 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상기 3사는 타일에 대해서도 가격 카르텔을 했다 하여 10만의 호주 달러의 벌금 지불을 명령하였다. 또한 금번의 카르텔에 의하여 세계무역센터빌딩, 퀸즈랜드·컨벤션센터 등의 다수 건설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

(1995. 12. 5. Financial Times)